

## FTA 시간 표현의 번역문제 — ‘before’와 ‘after’를 중심으로

유 정 주  
(한동대)

### 1. 연구의 배경

조약은 국제법의 대표적인 법원(法源)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현대 조약법에 관한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3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에 의하여 정본으로 확정된 조약문은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 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미 FTA 와 한·EU FTA는 영문본과 정본 번역(authoritative translations)<sup>1)</sup>인 국문본<sup>2)</sup>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대

---

1) 자르체비치(Šarčević 1997: 20)에 따르면 번역본의 법적 지위는 1) 해당 국가의 입법 기관에 의해 법률의 일부로 채택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본 번역(authoritative translations, authentic texts), 2) 해당 국가가 서명은 했지만 법률로 채택하지는 않은

표적인 국제법상 조약<sup>3)</sup>으로, 원칙상 각 정본의 모든 용어는 동일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율된 최종 텍스트여야 한다.

그러나 정본 번역은 협상 과정에서 의도한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간주되는 원본(basic or original text)에 대해 의미상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법률 텍스트의 의미는 법체계에 구속된 법적 맥락의 지배를 받으며, 각각의 정본은 작성 언어와 관계없이 해당 텍스트를 규율하는 법에 의해 해석된다. 따라서 상이한 법률시스템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경우, 수신자가 동일한 지시 시스템을 사용한다 해도 그 해석이 의도된 의미를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다(Šarčević 1997: 67-69). 또한 법체계나 법 개념의 차이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번역 담당자들이 확정된 문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정인섭 2016: 205).

따라서 각 정본 간 의미상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본 텍스트들의 공통 의미를 결정하는 작업을 번역 전 미리 거치거나, 법원의 병렬 텍스트 해석을 위한 명시적인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Šarčević 1997: 198-199). 또한 가독성보다는 일관성 유지를 통한 동일 해석 및 적용을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하여, 언어 간 일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해당 정본 내의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보장 과정인 ‘조율(harmonization)’과, 각 정본 간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보장 과정인 ‘일치(concordance)’를 통해, 법원의 텍스트 해석에 문제가

---

번역을 의미하는 공식본(official texts), 3)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작성한 번역을 의미하는 공식 번역(official translations)으로 구분된다.

- 2) ‘국문’이란 표현은 국가 관념이 국어와 연관되어 사용된 것으로, 민족주의적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표현인 ‘한국어본’ 또는 ‘한글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영훈 2014). 그러나 언론을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에서 모두 ‘국문본’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편의상 ‘국문본’과 그 대응어인 ‘영문본’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3) ‘조약’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이르는 총칭으로, 본고의 분석대상인 협정(Agreement)을 비롯해 헌장(Charter), 규약(Covenant),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등은 모두 조약의 유형에 속한다(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없도록 하여야 한다(Šarčević 1997: 202-203; Cao 2007: 152). 민감한 정치적 합의의 산물인 조약의 번역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소홀히 할 경우, 언어본 간 사소한 상충이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거나(Šarčević 1997: 200), 번역 오류로 인해 불측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발생하여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정인섭 2016: 205).

본고에서는 조약 번역에서 이렇게 사소한 정보 간 상충이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로, ‘before’와 ‘after’를 중심으로 한 시간 표현의 번역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법률 문서에서 시간 표현(expressions of time)이란 주로 특정 기간 또는 사건 사이의 기간에 대한 종결시점의 결정과 관련되며, 해당 기간의 계산 시 시작일과 종결일을 포함할 것이냐, 제외할 것이냐의 문제로 인해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Cao 2007: 158; Daigneault 2009: 41). ‘promptly’, ‘as soon as possible’, ‘within a reasonable period’와 같은 표현 역시 영어로 작성된 법 문서에서 해석상의 모호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시간 표현에 해당하지만,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남겨 둔 협상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에 번역담당자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번역하지 말고 기존 관행에 따라 번역한 뒤 사법부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

반면, ‘before’와 ‘after’는 시간 범주(time spans)를 나타내기에 가장 안전한 방식 중 하나로 지적될 정도로 영미법계 법원이 일관된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Haggard & Kuney 2007: 260), 정보 번역에서도 영문본에 의도된 의미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함으로써 동일한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정보 번역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번역된 용어가 다른 국내법의 의미와 충돌되지 않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섬세한 고려 없이 조약 번역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기존 문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템플릿 등에서 관련 조항을 추출하여 사용할 경우, 잘못된 번역이 향후 체결될 조약에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령 간 용어의 의미 충돌로 인해 법원의 해석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Daigneault 2009: 32). 2011년 한·미 FTA 번역 오류<sup>4)</sup> 사태 이후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4) 한·미 FTA와 한·EU FTA 국문본은 영문본과 동등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간 발생

정본 번역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주로 순수 전문용어나 준·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용어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일상용어로 분류되기 쉬운 ‘before’나 ‘after’와 같은 어휘들은 검증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었다고 판단된다.<sup>5)</sup>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에 발맞추어, 대표적인 정본 번역인 한·미 FTA와 한·EU FTA 국문본의 ‘before’와 ‘after’ 관련 시간 표현의 기 번역 내용을, 정본 번역의 원칙인 ‘조율’과 ‘일치’의 관점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한·미 FTA와 한·EU FTA 국문본에서 ‘before’와 ‘after’가 사용된 시간 표현의 한국어 번역 대응어가 각 텍스트 내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번역 대응어가 원본인 영문본에서 의도한 법적 효과를 동일하게 달성함으로써 정본 간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고의 문제의식을 통해 FTA와 같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정본 번역 과정이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용어 외의 어휘 및 구문들까지 충분한 조율과 일치 과정을 거치게 되길 기대한다.

## 2. 법문에서 시간 표현의 번역문제

### 2.1 법문의 해석원칙과 일관된 용어사용의 중요성

법문 작성의 제1원칙은 ‘명확성(clear draft)’으로, 명확하다는 것은 곧 ‘정확성(accurate draft)’을 의미한다. 법문이 명확하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

---

한 상호 불일치(discordance)는 ‘번역 오류(mistranslation)’가 아니라 ‘법적 효과의 불일치’로 보는 게 타당하겠지만(방교영, 신항식, 배선경 2011: 32),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번역 오류 사태’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편의상 ‘번역 오류’라는 표현을 유지하였음을 밝혀둔다.

- 5) 알카라즈와 휴즈(Alcaraz & Hughes 2002: 16-18)에 따르면 법률용어는 1) 법률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어인 순수 전문용어(purely technical terms), 2) 법적 행위의 전문 맥락에서 유추 과정을 통해 추가적 의미를 획득한 단어어인 준·전문용어 또는 혼합용어(semi-technical or mixed terms), 3) 법률어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상적 의미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전문적 의미도 획득하지 못한 용어들인 일상용어(everyday vocabulary)로 분류할 수 있다.

며,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음을 뜻한다(Dorsey 2006: 175-176). 그러나 언어의 가변적 본질로 인해 법문에는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용어나 표현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하나의 의미를 갖되 해당 의미의 범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인 '모호성(vagueness)'과 특정 단어나 구문, 문장이 2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애매성(ambiguity)'으로 구분된다(Alcaraz & Hughes 2002: 24-46; 유정주 2012: 111-113).

모호성은 법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대립되는 입장을 고려해 정확한 기준이나 규칙을 제시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모호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으로(Xanthaki 2013: 12), 해석의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는 면에서 유용하다고 간주되기도 한다(Dorsey 2006: 176). 본고의 연구 대상인 조약의 경우에도 대립되는 당사국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문언을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호성과 관련한 해석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정인섭 2016: 162). 반면, '애매성'은 단어 자체의 의미는 애매하지 않으나 문법 또는 구문 상 문제로 발생하는 애매성과, 단어 자체의 다의성(polysemy)에서 발생하는 애매성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애매성은 모호성과 달리 법문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불명확성으로 분류되며(Dorsey 2006: 176), 문맥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제 시 해당 단어의 의미 확장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별도의 정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Xanthaki 2013: 13).

법문의 이러한 모호성과 애매성은 해당 표현의 '일반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의미'에 근거해 해석을 내리는 'Plain Meaning Rule'과, 문제가 되는 특정 단어 나 문장만을 별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텍스트를 고려하는 'Whole Act Rule'에 의해 해석된다(Dorsey 2006: 79-83). 조약의 경우에도 비엔나협약 제31조에 의해, 조약문의 문맥 및 해당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원칙이 적용된다.<sup>6)</sup> 그런데 법원이 모호하거나 애매한 법문에 대해 이러한 해석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 전체에서 일관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다. 동일한 용어가 두 곳 이상에서 사용될 경우, 법원은 해당 용어가 각각의 맥락에서 동일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역으로 한 곳에서는

6) 이때의 '문맥'에는 조약 본문 외에 전문, 부속서, 해당 조약 체결과 관련한 당사국의 합의, 관련 문서가 모두 포함되며, '통상적 의미'는 사전이나 전문서적상 정의 외에도 조약의 문맥 속에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결정된다(정인섭 2016: 172-178).

특정 용어가, 다른 곳에서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각 용어가 별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Dorsey 2006: 84).

이러한 측면에서 조약을 비롯한 법문에서 동일 개념을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다. 법문에서 사용된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와 같이 동일 개념을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우아한 변이 (elegant variation)’란 있을 수 없으며, 처음부터 최적의 단어를 선택하여 문서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Martineau & Salerno 2005: 60; Child 2004: 319-320). 특히 본고에서 다루게 될 ‘before’나 ‘after’를 사용한 시간 표현의 경우, 일반적인 단어나 구문과 달리 문맥을 통한 애매성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법제 시 과도한 정확성은 해석의 범주를 좁혀 오히려 법문해석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특정 시점과 관련한 시간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매우 좁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Dorsey 2006: 176).

영문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한·미 FTA와 한·EU FTA 국문본 역시 일반적인 법문 작성 및 해석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미 FTA의 국문본 작성(번역)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 (외교통상부 2007: 1)을 보면,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소의 어색함을 감수하더라도 영어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모두 기입한다.”고 명시하여, 애매성 방지를 위한 ‘명확성’을 주요 텍스트 작성(번역)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하나의 장에서 동일한 영어 문장 및 단어는 가급적 동일하게 국문화7)”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해석을 위한 전제 조건인 텍스트 내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칙상으로는 법문의 일반적인 작성 및 해석원칙이 번역본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다만, 일관성 원칙을 ‘하나의 장(Chapter)’으로 한정된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정본 번역 작성 원칙상, 장 단위의 일관성은 물론 해당 정본 내의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각 정본 간 일관성까지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Šarčević 1997: 202-203; Cao 2007: 152).

그러나 2011년 한-미 FTA 번역 오류 사태는 정본 번역 텍스트 작성 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는 번역 담당자의 역량 문제이거나 해당 협정문 자체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텍스트의 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이 국문본에 열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파생된 문제일 수 있다. 정본 간 의미 상충이 발생할 경우 비엔나협약에 따라 해당 조약의 대상과 목적과 관련해 가장 잘 부합하는 언어본의 의미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쟁 발생 시 법원은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간주되는 원본인 영문본을 해석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정인섭 2016: 205), 국문이 아닌 영문 협정문의 작성에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FTA와 같이 기 체결된 협정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이 많은 조약의 경우, 국문본 제작 시 기존 번역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약간의 수정만 거치기 쉬운데, 이는 잘못 번역된 용어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Daigneault 2009: 32). 본고에서는 번역 오류 사태 이후 상기와 같은 조약문의 텍스트 작성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4장의 협정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2.2 영미법 상 ‘before’와 ‘after’의 해석문제

한사키(Xanthaki 2013: 120-123)에 따르면, 법령의 시간 관련 규정은 1) 특정 시점(point in time), 2) 개시 및 종결 시점이 정해진 기간(period certain at each end) 또는 3) 개시 또는 종결 시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정해진 기간(period certain at one end) 동안 의도된 결과가 일어나도록 작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 및 시간 범주 관련 표현들은 법문서 작성 시 해석상의 애매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Daigneault 2009: 41-42; Adams 2017: 241-242). 이는 전통적인 의미와 합치되지 않는 법적 의미로 해석 가능한 사례들이 빈번하여, 이를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의도치 않은 애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between A and B’의 경우, 일반인들은 이를 시작일과 종결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법원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from A to B’의 경우에는 일부 법원은 시작일과 종결일을 모

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 법원은 시작일은 제외하고 종결일만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법원은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원의 해석도 일치되지 않는다(Haggard & Kuney 2007: 256; Child 2004: 320-322).

이에 반해 본고에서 다룬 ‘before’와 ‘after’는 영미법에서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어 애매성을 야기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표현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before’와 ‘after’는 해당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며, 해당일을 포함할 경우는 일반인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on or before’, ‘on or after’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Haggard & Kuney 2007: 257). 즉, 시작점을 나타내는데 불명확성을 야기할 수 있는 ‘from’을 사용하거나 종결점을 나타내는데 ‘to’, ‘until’, ‘by’ 등을 사용하지 말고, 해당 기간의 시작 직전일에 ‘after’를 사용하고, 해당 기간의 종결 직후일에 ‘before’를 사용하면 해석상의 애매성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Martineau & Salerno 2005: 74).

구체적으로, 법 문서에서 ‘before’와 ‘after’의 해석 문제는 주로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에서와 같이 개시 및 종결 시점이 정해진 기간이나, ‘this Act applies to proceedings commenced on or after the date of the coming into operation of this Act’와 같이 개시 또는 종결 시점 가운데 하나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사키(Xanthaki 2013: 122, 125)는 특히 상기 첫 번째 유형과 관련하여 ‘within’ 형식의 사용이 혼하다고 언급하면서, ‘within’ 뒤에 ‘of’, ‘after’, ‘from’으로 개시 시점을 표현할 경우 해당 시점은 모두 기산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한다. 즉, 시점을 나타내는 ‘of’, ‘from’은 ‘after’의 동의어로서, ‘within two days after’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after’ 뒤에 언급된 일자 는 기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급된 일자를 기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on or after’나 ‘on or before’와 같이 ‘on’을 사용해야 하며, ‘not later than’, ‘no later than’, ‘not earlier than’과 같은 표현 역시 ‘by’, ‘until’ 등과 함께 해당 일자를 기산에 포함시킬 때 사용한다. 반면, ‘before’와 ‘after’의 경우 뒤에 언급된 해당일을 명백하게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from’의 경우 해당일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일을 기산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on or after’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after’를 사용해야 한다(Xanthaki 2013: 123; Garner 2011: 606).

이와 같이 ‘before’와 ‘after’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과 법 언어 전문가들 사이에 비교적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의 해석법(interpretation statutes<sup>8)</sup>)에서 시간 및 기산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성문법 상 의미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미법계의 양측을 구성하는 영국, 미국의 해석법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해석법에서 시간 관련 규정을 찾아, 이 가운데 ‘before’와 ‘after’의 해석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영미법계 해석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978년 영국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978)의 경우, 시간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before’와 ‘after’에 대한 별도의 해석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연방법전 제1편제1장의 해석규정(RULES OF CONSTRUCTION) 역시 ‘before’와 ‘after’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 해석법(Australian Interpretation Act 1901) 제36조제1항은 기산(calculating time)과 관련한 해석원칙을 명시하면서, ‘from’과 ‘after’, ‘before’의 경우 해당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일례로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7 days before the day a proceeding starts’에서와 같이 ‘소송개시 전 7일의 기간 중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소송이 5월 8일에 개시된다면, 전술한 7일의 기간은 5월 1일자로 시작하여 5월 7일에 종료된다.’<sup>9)</sup>

법령의 시간관련 표현에 관한 해석원칙을 규정한 뉴질랜드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999) 제35조(Time)의 경우에도 ‘from’과 ‘after’, ‘before’ 다음의 일자나 사건은 해당일이나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 캐나다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985) 역시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 기산(Computation of Time) 관련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after’와 ‘from’의 경우 해당일을 불포함하며(제27조제4항) ‘within a time after/from/of/before’ 다음

8) 영미법계의 해석법은 1850년 대영제국법(United Kingdom Act of 1850)을 모태로 하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함으로써 법을 간명화하고 성문법 간 형식과 언어의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시간 및 기산 관련 규정은 영미법계 해석법에서 공통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Xanthaki 2013: 127, 138).

9) “If a person must give a notice to another person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7 days before the day a proceeding starts and the proceeding starts on 8 May, the notice may be given at any time during the 7 day period starting on 1 May and ending on 7 May.”

에 특정일이 오는 경우 해당일은 불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7조제5항).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FTA와 같은 조약문을 비롯한 영미법계 법령문에서 ‘before’와 ‘after’는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2.3 한국법 상 ‘before’와 ‘after’의 번역문제

위와 같이 영미법에서 ‘before’와 ‘after’가 해당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역시 기준 시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정보 간 동일한 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국어에서 ‘before’와 ‘after’의 번역 대응어로 흔히 사용되는 ‘전’과 ‘이전’, ‘후’와 ‘이후’의 일상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보 간 ‘일치’를 달성할 수 있는 번역 대응어를 탐색해 보겠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전(前)’은 ‘막연한 과거의 어느 때’를 가리키거나, ‘(일부 명사나 ‘-기’ 다음에 쓰여) 이전’의 뜻을 나타내며, ‘이전(以前)’은 ‘이제보다 전, 또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앞’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이를 보면 ‘전’의 정의를 위해 ‘이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전’의 의미는 다소 막연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전’의 경우는 기준 시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후(後)’의 경우는 ‘뒤나 다음’, 또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뒤나 다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이후(以後)’는 ‘이제부터 뒤 또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로 정의되어 있다. ‘전’과 마찬가지로 ‘후’의 경우에도 ‘뒤나 다음’이란 용어만으로는 기준 시점 포함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의 경우에는 명백히 기준 시점을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전’과 ‘이전’, ‘후’와 ‘이후’의 기준 시점 포함여부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입장은,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국어 생활 종합상담실 ‘온라인 가나다’의 관련 질의를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위 문제와 관련한 여러 건의 질의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은 “해당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소 정확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원래 의미와 다소 다르게 받아들

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따라서 ‘이전’과 ‘이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한 전·후의 뜻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sup>10)</sup>. 이를 보면, 한국어 언중이 ‘전’과 ‘이전’, ‘후’와 ‘이후’를 단순히 선후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일상 언어 맥락에서 혼용하는 경향은 분명하지만, 사전 상으로 ‘전’과 ‘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과 ‘이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법령의 맥락에서 ‘전’과 ‘이전’, ‘후’와 ‘이후’가 갖는 법적 의미가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영미법계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별도의 해석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해석의 기준’, ‘해석·적용상의 주의’ 등의 제목으로 해석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시간과 관련한 사법적 해석이나 행정적 해석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해석 규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사 법령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 박영도(2001: 147)에 따르면 “법령 용어 가운데 ‘전’과 ‘이전’, ‘후’와 ‘이후’는 모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간적 선후관계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전’과 ‘이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적 의미를 구체적인 법령 맥락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시점(始點)을 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의 규정방식 및 관련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적용례는 법령이 개정되어 신법·구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으로,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경우(하는 것, 하는 자,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가 기본형식을 이룬다. 법제처는 법령 입안·심사기준(2017a: 585)에서 “적용례를 ‘이 법 시행 후’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으나 시행일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이후’라고 표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후’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을 명시하고 있다.<sup>11)</sup> 즉, 아래 <예 1>에서 ‘이 법 시행 이후’라 함은 ‘기준 시점인

10) [http://www.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front=5DD768AFE3E465DA1BE2917BEDE69712?mn\\_id=62&mcfaq\\_seq=1758&pageIndex=1](http://www.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front=5DD768AFE3E465DA1BE2917BEDE69712?mn_id=62&mcfaq_seq=1758&pageIndex=1)

11) 또한 법제처는 법령의 시행일 계산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을 반영한 질의에 대해 “2009. 2. 19.에 공포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표시되어 있다면, 시행일은 월에서 6을 더하고, 일에서 1을 더한 2009 8. 20.이 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를 나타낸다. 반면, '이 법 시행 전'이란 표현이 사용된 <예 2>의 경우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둔 것이므로, 여기서 '이 법 시행 전'이라 함은 동 법의 시행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법제처 2017a: 602). 즉, '후'와 '이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령의 적용례에서 '전'과 '이전'의 법적 의미가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 1> 부 칙 (법률 제14022호) 제2조(영업자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예 2> 부 칙 (법률 제11309호)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

이렇게 '전'과 '이전', '후'와 '이후'의 사전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결정될 경우,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영미법의 'before'는 한국법에서 '이전(以前)'이 아닌 '전(前)'으로, 'after'는 '이후(以後)'가 아닌 '후(後)'로 번역하여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와 더불어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within ninety days after it is opened'를 '개방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와 같이 번역하거나, 'not less than 60 days before the date public comments are due'를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와 같이 번역하는 등, 시작점을 '~부터'로 번역하는 조약 번역의 관행이다. 'before'와 'after'를 각각 '전'과 '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from'의 번역 대응어인 '~부터'로 번역하는 것은, 논리상 한국법에서 '~부터'가 '전'과 '후'와 마찬가지로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아야만 영문 조약과 동일한 법적 결과를 보

위의 입장과 동일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http://www.moleg.go.kr/english/korLawEng.jsessionid=VG4mTARYG4edWw1vU9PAbXG1iKGu9kHwtfQvjyqC26jQDgURrZJOY109jp105gBK?pstSeq=51054&brdSeq=33&pageIndex=6>

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법에서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 ‘~부터’는 기준 시점을 명백히 포함하는 개념이다(박영도 2001: 147; 법제처 2017b: 73-74). 이는 법령의 일반적인 시행일 규정방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법(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공포일부터 시작하거나, “이 법(영,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부터’로 표시된 해당 공포일이나 특정일이 곧 시행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법제처 2017a: 555-557). 따라서 영미법상 시작점을 포함하지 않는 ‘before’와 ‘after’를 시작점을 포함하는 ‘~부터’로 번역할 경우, 정본 번역의 ‘일치’ 원칙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예 3>과 같이 이미 2011년 한·미 FTA 번역 오류사태 시 박주선 의원실(201112)이 제기한 유형별 번역 오류 중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번역’으로 분류되어 ‘오역’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오류번호 194, 405, 427 등 참조), 번역 오류 사태 이후에도 정본 번역에서 ‘before’와 ‘after’를 ‘~부터’로 번역하는 관행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예 3> 오류번호 194 (한·미 FTA제10.3조) 그 공고를 공포한 날로부터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날로부터-->날 후) (박주선의원실 2011: 8)

다만, 그간의 조약 번역 관행상 시작점을 나타내는 ‘from’을 ‘~부터’로 번역해 왔고, 영미법에서 기준점을 나타내는 ‘from’, ‘of’, ‘before’, ‘after’가 통상 기준 시점을 불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을 감안한다면, ‘~부터’를 해당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before’, ‘after’의 번역 대응어로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 효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해석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터’의 통상적 의미 결정은 결국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번역자가 ‘before’와 ‘after’를 기존 관행대로 ‘~부터’로 번역한다고 해서 이를 선불리 오역으로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과 ‘후’로도 충분히 번역이 가능한 상황에서

12) <시사IN>과 박주선 의원실이 공동 기획한 ‘한·미 FTA 번역 오류 시민검증 프로젝트’의 최종결과물로, 주요 유형별 번역 오류 507건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시민 검증단이 초별로 확인한 내용을 박주선 의원실과 민변, 국제금융통상위원회가 최종 검증했다(<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618>).

이를 '~부터'와 혼용하여 번역하는 것은 정본 내 용어의 일관성 보장 과정인 '조율'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영문본에 의도되지 않은 해석상의 애매성을 야기함으로써 정본 간 '일치'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본 번역은 가독성보다는 일관성 유지를 통한 동일 해석 및 적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Sarčević 1997: 202-203), '날 후'보다 '날로부터'가 한국어의 가독성 측면에서 보다 자연스럽다고 해도, 정본 간 동일한 법적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우아한 변이'는 '우이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상기에서 논의한 'before'와 'after'의 구체적인 번역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FTA 공식사이트 (<http://www.fta.go.kr/main/>)에서 한·EU FTA(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와 한·미 FTA(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영문본 최종 PDF 파일<sup>13)</sup>을 다운받아 이를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한 뒤, 무료 코퍼스분석도구인 AntConc 3.5.5<sup>14)</sup>를 이용해 각각 'before'와 'after'를 검색어로 하여 콘코던스를 도출했다(그림 1 참조). 도출 결과 한·EU FTA 영문 텍스트 파일에서 'before'의 빈도수는 총 64건, 'after'는 106건이었고, 이 가운데 'on or before'는 1건, 'on or after'는 0건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경우 'before'의 빈도수는 총 61건, 'after'는 169건이었고, 이 가운데 'on or before'는 3건, 'on or after'는 3건이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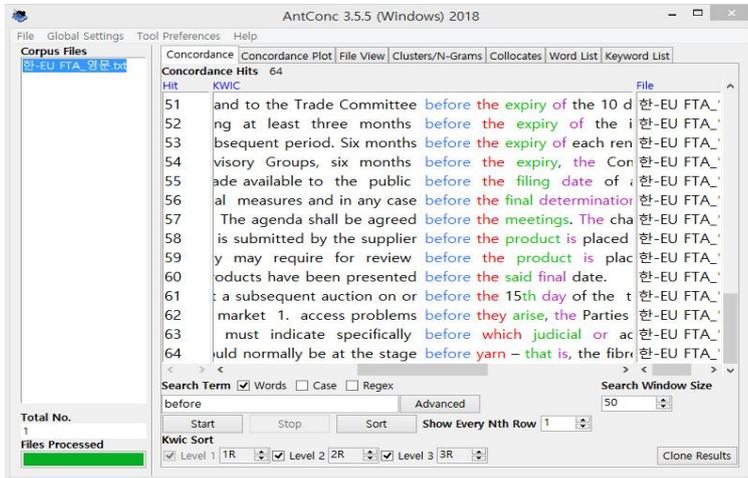
다음으로, 발생된 콘코던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Nationality Condition for Representation before competent authorities', 'the matter is pending before an

13) 전문(Preamble), 협정 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부속서한(letter) 등이 모두 포함된 전체 협정문이다.

14) <http://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15) 영문 파일에서 'on or before'와 'on or after'가 발생된다는 것은 영문본 작성 시 'before' 및 'after'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on or before'와 'on or after'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것을 의도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international body'와 같이 해당어가 시간 관련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는 콘코던스를 제거했다. 또한 'after-sales service costs', 'after-shaving lotions'와 같이 'after'가 정형화된 관용어구로 사용된 콘코던스도 집계 및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amend this Chapter, after consultations' 같이 단순한 선후 관계만을 나타낼 뿐 기산과 관련한 해석상의 애매성이 발생하지 않는 콘코던스의 경우는 용어 사용의 일치성 판단을 위해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림 1〉 한·EU FTA 영문 텍스트 파일에서 'before'의 콘코던스 화면

그 결과 한·EU FTA 영문본에서 최종 분석대상이 된 콘코던스는 'before' 48건, 'on or before' 1건, 'after' 105건('on or after' 0건)이었고, 한·미 FTA 영문본의 경우 최종 분석대상 콘코던스는 'before' 41건, 'on or before' 3건, 'after' 162건, 'on or after' 3건이었다. 이렇게 결정된 최종 콘코던스를 한·EU FTA와 한·미 FTA의 국문본 해당 조문과 각각 대조하여 'before'와 'after'의 실제 번역 양상을 조사하여 기록하고,<sup>16)</sup> 이를 정본 번역의 중요원칙인 '조율'과 '일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16) 한·EU FTA와 한·미 FTA의 영문본과 국문본 전체를 병렬코퍼스로 편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before'와 'after'의 발생건수가 총 500건을 넘지 않는데다 조약문의 특성상 조문번호가 달려있어 수작업 대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 4. 분석결과

### 4.1 한·EU FTA

#### 4.1.1 'before'의 번역양상

먼저, 한·EU FTA 영문본에서 최종 분석대상이 된 48건의 'before' 콘코던스를 국문본과 대조한 결과, 'before'가 '~전'으로 번역된 건수는 39건, '~이전'으로 번역된 건수는 8건, 시작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번역되지 않고 생략된 건수는 1건으로 나타났다. 한·EU FTA의 경우 'before'가 '~이전'으로 번역된 경우가 '~전'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긴 했지만, 8건이 아닌 단 1건의 예외도 법원의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본 번역의 일관성 원칙인 '조율'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미법상 'before'가 한국법에서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이전'이 아닌 '전'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예 4>와 같이 해석의 애매성을 없애기 위해 동일 텍스트 내에서 'before'와 구분하여 'on or before'가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번역어가 '이전'으로 수립되어 있는 만큼, 국문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구분하여 'before'를 '~전'으로 번역하여야 정본 간 일관성 보장 원칙인 '일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4> at a subsequent auction on or before the 15th day of the third month: 셋째 월 15일 이전의 후속 공매에서 (한·EU FTA 국문본 p.573)

<표 1> 한·EU FTA에서 'before'가 '이전'으로 번역된 콘코던스

콘코던스	국문본 페이지	영문	국문(번역문)
22	920	Provided that these countries were OECD and NATO members <u>before</u> 20 June 1996.	다만, 이 국가들이 1996년 6월 20일 <u>이전에</u>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한정함.
29	1105	the stages <u>before</u> spinning takes place	방적 처리되기 <u>이전</u> 단계

32	638	a contract made <u>before</u> the additional duty is imposed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맺은 계약
38	970	even <u>before</u> the commencement of proceedings	절차의 개시 이전이라도
43	958	<u>before</u>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rotection or recogni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이전에
44	962	<u>before</u> the date of disclosure of an unregistered design	미등록 디자인의 공개일 이전에
55	962	<u>before</u> the filing date of a registered design	등록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64	1105	the stage <u>before</u> yarn	사 이전의 단계

상기 <표 1>은 한-EU FTA에서 'before'가 '~이전'으로 번역된 콘코던스를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22번, 38번, 43번, 44번, 55번 콘코던스는 모두 개시 또는 종결 시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정해진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당 시점의 포함 여부와 관련한 해석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22번 콘코던스와 같이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거나, 43번, 44번, 55번과 같이 '출원일'이나 '공개일'로 개시 또는 종결 시점이 명시된 경우에는, 영문본에 의도된 법적 효과인 '해당시점 불포함'과 국문본을 통해 달성될 법적 효과인 '해당시점 포함'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서 정본 간 '일치'가 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단순한 선후(先後)가 아니라 해당시점이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콘코던스와 맥락상 차이가 없는 'before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이나 'before the said final date'을 각각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국문본 p.1033)'와 '해당 마감일 전에(국문본 p.1092)'와 같이 모두 '~전'으로 번역하다가, 갑자기 '이전'으로 번역한 것은 정본 번역의 '조율'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9번과 64번 콘코던스의 경우 각각 직물의 가공 단계와 관련한 선후를 나타내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전'으로 번역하든 '이전'으로 번역하든 법적 효과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정본 번역의 '조율' 원칙상 해당 텍스트 내에서 'before'의 번역어를 '전'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하겠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예 5>와 같이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가 생략된

‘before’의 번역 문제다. 2장에서 설명한대로 ‘before’는 기준 시점(시작점)을 불포함하고 ‘no later than’은 기준 시점(종결점)을 포함하므로, <예 5>의 영문에서 의도된 법적 의미는 ‘심리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5일 이내’일 것이다. 이를 국문본과 같이 한국어의 조사 생략 현상을 반영하여 ‘심리일 5일 이전에’로 번역하게 되면 개시 시점인 ‘심리일’의 포함여부와 관련해 해석의 애매성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한국법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명시한 숫자를 명백히 포함하는 개념인 ‘~이내’를 활용하여(법제처 2017b: 79, 84) ‘심리일 전 5일 이내에’로 번역한다면 개시 및 종결 시점과 관련한 애매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 5> no later than five days before the date of hearing: 심리일 5일 이전에 (국문본 p. 1052)

<예 6> no later than 15 days befor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조사를 개시하기 15일전에 (국문본 p. 641)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before’와 ‘after’를 ‘~부터’로 번역하는 것을 그간의 조약 번역 관행에 따라 용인할 경우, <예 5> 역시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 ‘~부터’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오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상기 표현과 동일하게 ‘no later than’과 ‘before’를 사용한 <예 6>을 보면 ‘15일 이전’이 아닌 ‘15일전에<sup>17)</sup>’로 번역되어 있어, 영문본의 ‘no later than’에 의도된 기준 시점 ‘포함’과 법적 효과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상기 표현과 관련된 텍스트 내 ‘조율’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동일 텍스트 내에 이미 ‘no later than’을 ‘~이내’로 번역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sup>18)</sup>, 텍스트 내 ‘조율’ 원칙을 고려해 ‘no later than ~before/after’ 관련 표현 역시 통일하여야 법원의 정확한 해석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 한·EU FTA 국문본의 띄어쓰기 오류를 그대로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18) e. g. 한·EU FTA 국문본 p.592, p.635, p. 664, p.700, p. 706, p.709, p.836, p.837, p.840, p.930, p.1022, p.1030, p.1031, p.1037, p.1048, p.1054

4.1.2 'after'의 번역양상

다음으로, 한·EU FTA 영문본에서 최종 분석대상이 된 105건의 'after' 콘코던스에 대한 국문본 대조 결과를 소개한다. 해당 105건의 콘코던스 가운데 'after'가 '~후'로 번역된 건수는 81건, '~이후'로 번역된 건수는 7건, '~부터'로 번역된 건수는 10건, 시작점이 생략된 건수는 7건이었다(표 2 참조).

〈표 2〉 한·EU FTA에서 'after'가 '이후'로 번역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콘코던스

콘코던스	국문본 페이지	영문	국문(번역문)
11	1087	one year <u>after</u> entry into force	발효 1년 후
33	641	investigation <u>after</u> termination	종료 이후 조사
39	912	any international agreement ...signed <u>after</u>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서명되는 모든 국제협정
40	916	international agreement...signed <u>after</u>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서명되는 ...국제협정
41	924	international agreement signed <u>after</u>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서명된...국제협정
43	925	international agreement ... signed <u>after</u>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서명된...국제협정
57	1023	90 days <u>after</u> the delivery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일 후
59	13	three years <u>after</u>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60	17	three years <u>after</u>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77	1045	five years <u>after</u>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발효 5년 후
78	1087	starting from one year <u>after</u>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를 시작으로
81	949	shall expire not less than 50 years <u>after</u> the first transmission of a broadcast	방송의 최초 송신 50년 이후에 만료된다
83	1087	at any time <u>after</u> the initiation of the above review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90	893	which will enter into force <u>after</u>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서명 이후 발효될

이 가운데 <예 7>과 같이 ‘after’를 ‘~부터’로 번역한 10건은, 앞서 논의한 대로 한국법에서 ‘~부터’가 일반적으로 해당 시점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영미법상 ‘~부터’에 해당하는 ‘from’은 해당 시점을 불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석의 애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시작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생략한 경우 역시, 앞서 지적한 대로 오역은 아니더라도 개시시점의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예 7>의 경우, 종결점을 ‘~후’로 번역한 <표 2>의 11, 57, 59, 60, 77, 78번 콘코던스에 반해, 종결시점을 ‘~이후’로 번역하고 있어, 시작점 외에 종결점과 관련한 애매성까지 야기된 사례다.

<예 7>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통보일부터 10일 이후  
(국문본 p. 1033)

이러한 관점에서, 발효와 관련한 표현인 11번, 59번, 60번, 77번 콘코던스의 경우 개시시점 불포함을 ‘~후’로 명시하고, 한국 법령에서 발효와 관련한 일반 규정인 부칙 적용례와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발효 후 1년이 경과한 날’,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날’ 등으로 번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78번 콘코던스 역시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와 같이 번역하면 기산시점의 애매성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33번, 39번, 40번, 41번, 43번, 83번, 90번 콘코던스와 같이 ‘after’를 ‘~이후’로 번역한 사례이다. 협정의 발효일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등장하는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를 모두 ‘이 협정의 발효 후’로 번역하다가, 위 콘코던스처럼 ‘~이후’로 번역한 것은 국문본의 ‘조율’ 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2>와 같이 국문 협정문의 동일 페이지(p.924)에서조차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를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로 각기 번역한 사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외교통상부 2007: 1)이 천명한 ‘장(Chapter)’ 별 용어 사용의 일관성 원칙마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정리해 보면, 한·EU FTA 정본 번역에서 ‘before’와 ‘after’는 각각 ‘~이전’과 ‘~이후’로 번역되어 영문본과 법적 결과가 달라진 경우가 다수 발견됐고, 한

국법상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부터’로 번역되거나 기준 시점을 생략하고 번역함으로써 개시시점과 관련한 애매성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fore’와 ‘after’ 관련 번역에서 정본 간 용어의 ‘일치’ 및 정본 내 용어의 ‘조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1.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서명된 다음의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들에 대해 자동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가) 수산, 또는 (나)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2.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 즉 대한민국이 어떠한 조치의 개정이 그러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결근,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정의견에 관계하든 합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자동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3.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 그리고 (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서비스 및 공항운영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자동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그림 2〉 한·EU FTA 국문 협정문 924p.

## 4.2 한·미 FTA

### 4.2.1 ‘before’의 번역양상

다음으로 한·미 FTA 영문본에서 최종 분석대상이 된 41건의 ‘before’와 3건의 ‘on or before’에 대한 국문본 대조 결과를 살펴보겠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before’와 ‘on or before’가 구분되어 사용됐는데, 3건의 ‘on or before’는 모두 아래 <표 3>과 같이 ‘~이전’으로 번역되어 개시시점의 ‘포함’ 측면에서 정본 간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before’의 경우 최종 분석대상이 된 41건 가운데 ‘~전’으로 번역된 건수가 31건, ‘~이전’이 4건, ‘~부터’가 2건, ‘~앞서’가 1건, 생략된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나, 텍스트 내 ‘조율’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3〉 한·미 FTA에서 'on or before'의 번역 콘코던스

콘코던스	국문본 페이지	영문	국문(번역문)
32	552	on or before June 30, 2005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33	42	on or before March 15	3월 15일 이전의
46	641	on or before the date this Agreement is signed	이 협정 서명일 이전에

구체적인 콘코던스를 살펴보면, 우선 'before'가 '앞서'로 번역된 6번의 사례는 단순한 선후관계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정본 간 '일치'에 큰 문제가 없고, 'before'의 번역어와 관련한 텍스트 내 일관성 관점인 '조율'의 측면에서 '~전'으로의 번역을 고려할 수 있다. 42번, 43번 콘코던스와 같이 'before'를 '~부터'로 번역한 경우 역시, 앞서 지적한 대로 조약 번역에서 그동안 '~부터'가 시작점을 포함하지 않는 'from'의 번역어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한다면, 정본 간 '일치'가 깨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작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생략된 34번과 51번 콘코던스의 경우에도, 조약 번역 관행상 '~부터'를 '~전'과 동일하게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오역으로 보기 어렵다.

〈표 4〉 한·미 FTA서 'before'가 '~전' 외로 번역된 콘코던스

콘코던스	국문본 페이지	영문	국문(번역문)
6	217	before adopting them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13	241	before December 31, 2008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4	247	before December 31, 2008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4	271	at least 90 days before submitting any claim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36	91	before taking any action under paragraph 10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42	123	not less than 60 days before the date public comments are due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43	512	not less than 40 days before the date public comments are due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이전에
48	446	before the grant of patent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51	19	at least 20 days before the new procedure or modification takes place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13번, 14번, 36번, 48번과 같이 ‘before’가 ‘이전’으로 번역된 사례는 텍스트 내 일관성은 물론이고, 정보 간 법적 결과의 불일치를 낳을 수 있어 재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동일 텍스트 내에서 해당시점을 포함하는 시간 표현인 ‘on or before’가 모두 ‘이전’으로 번역된 상황에서, 13번과 14번 콘코던스처럼 ‘before’를 ‘이전’으로 번역한 사례는 ‘조율’과 ‘일치’ 원칙이 모두 무너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두 콘코던스 모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Ⅱ’라는 동일한 규정에서 추출된 것임을 감안할 때, 번역문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된 것으로 추측된다. 동일한 규정은 동일하게 번역하여야 텍스트 내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오역이 그대로 복제되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 4.2.2 ‘after’의 번역양상

다음으로 한·미 FTA 영문본에서 최종 분석대상이 된 162건의 ‘after’에 대한 국문본 번역양상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한·EU FTA와 달리 한·미 FTA의 경우 ‘after’와 구분하여 기준 시점 포함을 나타내는 ‘on or after’가 3건 나타났는데, 이는 국문본에서 각각 ‘~부터’(2건)와 ‘~이후’(1건)로 번역되어 있었다(표 5 참조). 영미법에서 ‘on or after’는 ‘after’와 구분하여 기준 시점을 명백히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후’가 아닌 ‘~이후’로 번역되어야 정보 간 법적 결과의 일관성이 달성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법령에서 ‘~부터’는 시작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on or after’를 ‘~부터’로 번역한다고 해서 ‘~이후’와 법적 결과에 차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렇게 한·미 FTA 국문본에서 ‘~부터’를 시작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 ‘~부터’를 시작점을 포함하지 않는 ‘before’나 ‘after’의 번역어로 혼용해 온 기존의 조약 번역 관행과 충돌할 뿐 아니라, 정보 번역 내 일관성 원칙인 ‘조율’ 역시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before’와 ‘after’의 번역 대응어로 ‘~부터’를 혼용하거나 이를 생략하는 관행 대신, ‘before’는 ‘~전’, ‘after’는 ‘~후’로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터’의 해석과 관련한 애매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설사 기존의 관행에 따라 ‘~부터’를 ‘~전’, ‘~후’와 혼용하더라도, ‘~부

터’는 다른 국내법과 달리 시작점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임을 해석규정이나 국문본 작성원칙 등을 통해 명시하고, ‘on or after’의 번역어로는 ‘~부터’가 아닌 ‘이후’만을 사용하여야 ‘1용어 1개념’이라는 법원의 해석원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한·미 FTA에서 ‘on or after’의 번역 콘코던스

콘코던스	국문본 페이지	영문	국문(번역문)
42	446	filed on or after January 1, 2008	2008년 1월 1일부터 제출되는
43	447	filed on or after January 1, 2008	2008년 1월 1일부터 신청된
45	552	constructed on or after July 1, 2005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한편, 한·미 FTA 국문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62건의 ‘after’ 가운데, ‘~후’로 번역된 건수는 138건, ‘~이후’로 번역된 건수는 14건, ‘~부터’로 번역된 건수는 9건, 시작점 번역이 생략된 건수는 1건이었다. ‘~후’와 ‘~이후’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했지만, 한·EU FTA와 비교해 볼 때 ‘after’를 ‘~부터’로 번역하거나 시작점을 생략하고 번역한 경우가 줄어들어(예 8 참조), 관련 표현의 애매성 문제는 다소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after’를 ‘~부터’로 번역한 9건 가운데는, 한·EU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결시점을 ‘~이후’로 번역한 콘코던스가 발견돼(예 9 참조), 텍스트 내 ‘조율’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10>과 같이 동일한 구조의 표현에서 종결시점을 모두 ‘~후’로 번역하다가, 이를 <예 9>에서처럼 ‘~이후’로 번역한 사례는 시작점 및 종결점과 관련한 법원의 정확한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8> six months after it makes a determination: 결정을 내린 6월<sup>19)</sup> 후에 (국문본 p. 120)

<예 9> 30 days after the later of the date on which it provides: 나중에

19) 이와 같이 ‘개월’을 ‘월’로 축약하여 나타낼 경우 특정한 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법제처 2017b: 26), 한·미 FTA 국문본의 표현인 ‘이 협정 발효일 후 6월 이내에(pp.147, 477)’ 등은 ‘이 협정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국문본 p. 526)

<예 10> ten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60-day period extended: 60일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후 (국문본 p. 342)

또한, ‘after’를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이후’로 번역한 사례가 <표 6>과 같이 14건이나 나타나, 한·EU FTA 국문본에서 드러난 해당 표현의 ‘조율’ 및 ‘일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후’는 11번, 76번, 106번, 108번, 121번, 122번, 126번, 128번, 161번 콘코던스와 같이, 협정의 발효와 관련한 맥락에서 주로 사용됐는데, 이는 동일 맥락을 발효일을 포함하지 않는 ‘~후’로 번역한 대다수의 사례와 일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텍스트 내 ‘조율’ 원칙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발효일의 포함 여부와 관련한 정보 간 ‘일치’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예 11 참조).

<예 11> sign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국문본 pp. 627, 629, 678)

<표 6> 한·미 FTA에서 ‘after’가 ‘이후’로 번역된 콘코던스

콘코던스	국문본 페이지	영문	국문(번역문)
11	401	designate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지정하는
15	527	within 30 days after consultations begin	협정이 개시된 이후 30일 이내에
29	239	after it has been implemented	평가절차가 이행된 이후
46	144	after providing the importer with an opportunity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60	666	after the process is completed	이 개정 과정이 끝난 이후
76	269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106	21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108	119	promptly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신속하게

121	438	a Party identifies <u>after</u>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의 발효일 <u>이후</u> 당사국이 확인하는
122	460	a Party identifies <u>after</u>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 발효일 <u>이후</u> 당사국이 발견한
126	483	<u>after</u>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의 발효일 <u>이후</u>
128	494	<u>after</u>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의 발효일 <u>이후</u>
153	304	within a reasonable time <u>after</u>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신청의 제출 <u>이후</u> 합리적인 기간 내에
161	22	promptly <u>after</u>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의 발효 <u>이후</u> 신속하게

또한 15번 콘코던스의 ‘within 30 days after consultations begin’이라는 영문본의 동일 표현이 <예 12>에서는 ‘~후’로 번역되고, 108번 콘코던스의 ‘promptly after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라는 동일 표현이 <예 13>에서는 ‘~후’로 번역되는 등, 번역 오류 사태로 인한 여러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도 동일 텍스트 내 일관성 원칙인 ‘조율’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한·미 FTA 개정과 함께 국문본의 용어 및 표현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예 12> within 30 days after consultations begin: 60일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국문본 p. 254)

<예 13> promptly after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국문본 p. 18)

요약해 보면, 한·미 FTA 정본 번역의 경우 역시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전’과 ‘~이전’, ‘~후’와 ‘~이후’, ‘~부터’의 사용과 관련한 법문 작성의 명확성 및 일관성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동일 텍스트 내에서 ‘on or before’, ‘on or after’가 각각 3건씩 사용돼 ‘before’ 및 ‘after’와 시작점의 포함여부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문본에서

이를 반영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 간 ‘일치’ 달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전’과 ‘~이전’, ‘~후’와 ‘~이후’의 혼용 외에도 ‘~부터’를 사용하거나 시작점을 생략한 번역 역시 여전히 발견되고 있어, 해석의 애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표현의 텍스트 내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 5. 맺는 말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영문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보 번역인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 ‘before’와 ‘after’와 관련된 시간 표현의 번역 문제를 정보 번역 원칙인 ‘조율’과 ‘일치’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았다. 법률에서 기산(起算)과 관련된 규정은 영미법계 해석법의 공통 규정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해석상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작성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결과 한·EU FTA와 한·미 FTA 국문본에서 시간 표현으로 사용된 ‘before’와 ‘after’ 번역의 경우, 정보 간 일관성인 ‘일치’는 물론, 텍스트 내 일관성 장치인 ‘조율’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미법상 ‘before’와 ‘after’는 모두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는 한국법상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기준 시점을 불포함하는 ‘~전’과 ‘~후’로 번역하여야 정보 간 법적 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한·EU FTA와 한·미 FTA 국문본 모두 ‘before’가 ‘~이전’으로 번역되거나 ‘after’가 ‘~이후’로 번역된 경우가 다수 발견돼, 국문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으로서 이를 해당 시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또한 ‘before’와 ‘after’가 ‘~전’과 ‘~후’, ‘~이전’과 ‘~이후’ 외에도, 한국법상 통상적으로 시작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터’로 번역되거나, 한국어에서 허용되는 조사 생략현상을 반영하여 아예 번역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견돼, 해석상의 애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표현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번역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실제수신자인 사법부가 결정하게

되지만, 해당 용어가 텍스트 내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정확한 해석 작업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약문을 비롯한 법령문 작성에서는, 일반 문서의 경우와 달리 문서 전체에서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 일관성 있게 표현하여야 해석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특히 ‘before’와 ‘after’를 사용한 시간 표현의 경우, 다른 일반 용어나 표현에 비해 맥락을 통한 해석이 어렵고, 영미법상 공통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법원의 해석을 도울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법문 작성이 요구된다.

한·EU FTA와 한·미 FTA와 같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영문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정본 번역의 경우, 국문본 작성 후 외무부 조약과의 심의나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전문용어 외에도 준·전문용어와 일상용어에 이르기까지 정본 간 ‘일치’와 정본 내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경우 ‘before’와 ‘after’의 번역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지만, 한·EU FTA와 한·미 FTA에 사용된 준·전문용어 및 일상용어 전체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일치’와 ‘조율’ 문제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완료 후 국문 텍스트 제작 시 2011년 번역 오류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국문 협정문 개정 과정에서 모든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치’와 ‘조율’ 작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고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통해 조약 번역의 궁극적 목표인 ‘애매성이나 잘못된 해석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언어 간 일치를 담보하면서도 원문처럼 읽힐 정도로 자연스러운 텍스트 제작’(Šarčević 1997: 203)에 한발 더 나아가갈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박영도 (2001) 『법령용어사례집: 유사법률용어』,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박주선 의원실 (2011) 『한·미 FTA 번역 오류 시민검증 프로젝트 - 주요 유형별 번역 오류 507건』, 서울: 박주선 의원실.
- 방교영, 신항식, 배선경 (2011) 「한·EU FTA 협정내용 번역불일치의 사회기호학적 조망 - 민변 반박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5(1): 29-52.

- 법제처 (2017a) 『법령 입안·심사기준』, 세종: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법제처 (2017b)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 세종: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유정주 (2012) 「법령어의 애매성과 번역자의 해석문제: 대한민국법령의 ‘등’, ‘및’, 가운데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109-141.
- 외교통상부 (2007)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 서울: 외교통상부.
- 이영훈 (2014) 「번역과 국어: 개념사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8(3): 119-151.
- 정인섭 (2016) 『조약법 강의』, 서울: 박영사.
- Adams, Kenneth A. (2017) *A manual of style for contract drafting* (4th ed), Chicago, IL: American Bar Association, Business Law Section.
- Alcaráz, Enrique and Brian Hughes (2002) *Legal Translation Explained*, Manchester, UK; Northampton, MA: St. Jerome.
- Cao, Deborah (2007) *Translating Law*,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hild, Barbara (2004) *Drafting legal documents: principles and practices* (2nd ed), St. Paul, Minn.: West.
- Daigneault, Edward W. (2009) *Draf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 legal English* (2nd ed), Wien: Manz.
- Dorsey, Tobias A. (2006) *Legislative drafter's deskbook: a practical guide*, Alexandria, VA: TheCapitol.Net.
- Garner, Brian A. (2011) *Garner's Dictionary of Legal Usage* (3rd ed), Oxford; New York: Oxford UP.
- Haggard, Thomas R. and George W. Kuney (2007) *Legal drafting in a nutshell*, St. Paul, MN: Thomson/West.
- Martineau, Robert J. and Salerno, Michael B. (2005) *Legal, legislative, and rule drafting in plain English*, St. Paul, MN: Thomson/West.
- Šarčević, Susan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Xanthaki, Helen (ed.) (2013) *Thronton's Legislative Drafting* (5th ed). Haywards Heath: Bloomsbury Professional.

[Abstract]

**Issues of Translating Time Expres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Focusing on *Before* and *After***

Yoo, Jeong Ju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translations of time expressions using ‘before’ and ‘after’ in Korea-US FTA and Korea-EU FTA. ‘Before’ and ‘after’ phrases are commonly used when drafting international law provisions about time which represents a period of time of which the beginning or the end, or the both, are certain. However, these words often cause ambiguity in construing the inclusion of the specified date when translated into Korean. Under Anglo-American legal systems, ‘before’ and ‘after’ are construed so as to exclude the specified date, so their translations should also ensure such construction to achiev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English FTAs.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se ‘before’ and ‘after’ phrases often use ‘~이전’, ‘~이후’, ‘~부터’, which are construed to include the date specified under Korean law. The Korean versions of these FTAs are authoritative translations with the same legal validity as the original English versions; which must achieve “harmonization” to ensure internal consistency of terminology and expressions within a given text, as well as “concordance”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the authentic ver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Korean translations of ‘before’ and ‘after’ phrases in Korea-US FTA and Korea-EU FTA neither achieve consistency within the Korean versions, nor consistency with the English versions, thus failing to achieve the harmonization and concordance required for the authentic translation.

▶ Key Words: legal translation, FTA, time expressions, ambiguity

▶ 주제어: 법률번역, FTA번역, 시간 표현, 법해석, 애매성

유정주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외래교수

jeongjuy@naver.com

관심분야: 법률 번역, 법 언어, 법 해석, 코퍼스 언어학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